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44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조경태 · 한지아 · 신성범  
박성훈 · 엄태영 · 박정하  
최형두 · 서천호 · 서일준  
정연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이에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변경하여 증서에 기재된 인원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함께 정비하도록 하는것임(안 제17조 등).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유자는”을 “선박소유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2.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제65조의 제목 “(승무정원)”을 “(최소승무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무정원)(乘務定員)”을 “(최소승무정원)(最小乘務定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승무정원에”를 “최소승무정원에”로, “승무정원을”을 “최소승무정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무정원을”을 “최소승무정원을”로, “승무정원 증서를”을 “최소승무정원 증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을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제6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무정원에”를 “최소승무정원에”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를 “제69조, 제70조 및 제71조의”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 중 “승무정원에”를 “최소승무정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가정생활의”를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선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승무정원증명서와”를 “최소승무정원증명서와”로 한다.

제173조제1항제8호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승무정원의”를 “최소승무정원의”로, “승무정원을”을 “최소승무정원을”로 한다.

제17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선원이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무정원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승무정원 증서는 각각 제6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최소승무정원 및 발급받은 최소승무정원 증서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⑥ (생략)

<신설>

제65조(승무정원) ① 선박소유자는 제60조, 제64조 및 제76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乘務定員)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선박소유자는-----  
-----  
-----.

⑥ (현행과 같음)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제65조(최소승무정원) ① -----  
-----  
-----  
-----“최소승무정원”(最小乘務定員)-----  
-----

② 선박제원, 항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승무정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승무정원을 다시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정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항상 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인원을 채워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인원을 채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

② -----  
-----  
-----최소승무정원에-----  
-----  
-----최소승무정원을-----  
-----  
-----.

③ -----  
-----최소승무정원을-----  
-----  
-----최소승무정원 증서를-----  
-----.

④ -----  
-----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  
-----  
-----.

제68조(적용범위) ①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  
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 4.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  
하여 적용할 선원의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에 관한 기준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73조(유급휴가급) ① (생략)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9  
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  
-----  
-----  
-----  
-----제6  
6조의2를 제외하고는 이-----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최소승무정원에-----  
-----.

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73조(유급휴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9  
조, 제70조 및 제71조의-----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략)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 9. (생략)
10.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선원의 모성 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생략)

② (생략)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

-----  
-----  
-----  
-----  
-----  
-----  
-----.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최소승무정원에-----

3. ~ 9. (현행과 같음)

10.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선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① -----

무원에게 국내 항(정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기국에서 발급한 승무정원증명서와 그 증명서에 따른 선원의 승선 여부

2. ~ 5. (생략)

② · ③ (생략)

제173조(벌칙) ① 선박소유자,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 또는 재해보험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8. 제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승무정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하

-----  
-----  
-----  
-----.

1. -----최소승무정원증명서와-----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3조(벌칙) ①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7항까지의-----

9. -----최소승무정원의-----

-----최소승무정원을-----

<p>였을 때</p> <p>10. ~ 18. (생략)</p> <p>② (생략)</p> <p>제179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6. (생략)</p> <p>③ ~ ⑤ (생략)</p>	<p>-----</p> <p>10. ~ 1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u>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선원이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u></p> <p>5.·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